

[사 건 명] 행심 2018 - 36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10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6.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10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인천 ◎◎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2018. 6.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출석정지 10일,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 6. 26.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8. 7.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8. 6.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개최사실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결과를 통지하면서 전화를 하여 결과를 통지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출석정지를 바로 이행하라고 강요한 만큼,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청구인의 행위는 ○○○과의 장난에 불과하고 ○○○과 ○○○의 보호자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교육적 선도와 보호 목적이 아닌 오로지 처벌을 목적으로 판단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고의성과 심각성을 높음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거나 근거가 없고, 현재 청구인과 ○○○과는 화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통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남용이 있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재심인용결정에 따라 다시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처음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

는 만큼, 2018. 6. 21. 경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내용을 우선 문자로 전송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석정지 기간을 변경하였으며, 우편으로 관련내용을 송달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

다. 피청구인은 ○○○에게 장난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 폭력으로 인식한다면 폭력이 될 수 있고, ○○○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추가적으로 배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얼굴에 상처를 낸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정함에 있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 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4. 17. 2학년 1반 교실에서 쉬는 시간 중, 교복을 벗어 놓았고, ○○○은 청구인의 교복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의 팔을 4회 정도 때렸고, ○○○이 청구인이 이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인의 목을 조르자, 청구인은 ○○○의 얼굴을 폭행하려 얼굴에 상처를 입혔고, ○○○의 배를 발로 폭행하였다.

다. 청구인의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4. 25.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전학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전학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전학조치 취소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인천광역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전학조치 취소처분에 따라 2018. 6.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출석정지 10일,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6.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개최사실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만큼,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이 2018. 6.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참석케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2018. 4. 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의 모친도 이 사건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2018. 6.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피해학생과 화해를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선처하여 달라는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8. 6.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할 상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8. 6.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유를 참작하여 결정을 한 점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청구인이 2018. 6.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참석케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2) 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후에 결과를 통지하면서 전화를 하여 결과를 통지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출석정지를 바로 이행하라고 강요한 만큼,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출석정지 10일로서 출석정지기간을 특정하여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출석정지기간을 언제 하느냐는 피청구인의 교육적 차원과 청구인의 이행기간의 불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청구인의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조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결과를 우편송달

한 만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2) 청구인의 행위는 ○○○과의 장난에 불과하고 ○○○과 ○○○의 보호자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의 2018. 4. 17. 자술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팔을 세계 때렸다’, ‘내 얼굴을 치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얼굴이 긁혔다’ ‘내 배를 발로 걷어찼다’ 는 기재를 한 바 있는 만큼,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상의 폭력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나중에 ○○○이 장난이었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재량권일탈, 남용여부)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양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처분에 대한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